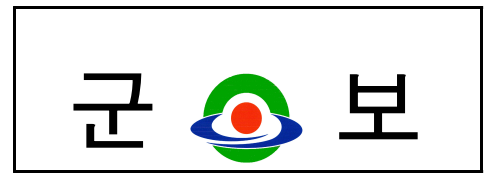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145호 2019. 1. 31.(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19-183호)
- 국방 군사시설 사업계획(안) 공고(국방부 공고 제2019-21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2월 1일

예 천 군



1. 제안이유

-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예천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 및 안정된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예천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책 마련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 인구정책 추진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및 군민의 참여 등 (안 제3조 ~ 제4조)
- 다.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기업·단체 등 지원,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3조)

- 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15조)
- 사. 인구교육 및 홍보(안 제16조 ~ 제17조)
- 아. 포상(안 제 1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결과 :
- 마.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2.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yuh7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청 기획감사실(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전화 : 054-650-6055, 팩스 : 054-650-605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예천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과 안정된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여 예천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2.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의 저출산·고령 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맞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참여 등) ① 군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예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

하여 전문가와 군민으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 법 제20조 및 제21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예천군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업·단체등 지원) ① 군수는 군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조사 및 연구) 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한다.

제2장 예천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인구업무 총괄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수가 지정하는 군 소속 공무원
2. 저출산·고령화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계기관 및 민간 단체 대표 또는 관련자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해당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업무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임기) ① 임명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장기간 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에 소홀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제14조(저출산 대책사업 추진) 군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결혼·임신·출산지원 사업
2. 양육·보육·교육지원 사업
3. 일자리·주거지원 사업
4.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5. 그 밖에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고령사회 대책사업 추진) 군수는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과 소득지원 사업
2. 건강증진 사업
3.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사업
4. 여가·사회활동 장려 사업
5. 그 밖에 고령사회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인구교육) 군수는 군민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7조(홍보) ① 군수는 인구의 날 취지에 맞는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사업에 필요한 홍보물품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에 노력한 군민, 공무원 및 단체 등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 하기 위하여 수립·시행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

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삭제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안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간사위원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과 제5조제3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저출산·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에 올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간사위원 2명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이 소속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부위원장.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2.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내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 공고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국 방 부 장 관

1. 사업의 명칭 : 공군 00전비 비행안전구역 매입사업
2. 사업의 개요 : 비행안전구역내 사유지를 매입하여 토지 사용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경상북도 예천군 유천면 송지리 368-1번지 등 3필지 2,820㎡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9.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 명 칭 : 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연 락 처 : 02 - 748 - 4257
6.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 붙임참조

※ 위 토지 세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담당자(053-750-719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안)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유재산과(02-748-5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 (細目)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용도구역 또는 용도지구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1	경북 예천군 유천면 송지리	368-1	답	2,489	2,489	답	농림지역	서울 양천구 월정로 3*길 1*, 20* 호 (신월동, **힐타운)	이*철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45 -1	예천농협 협동조합
2	경북 예천군 유천면 송지리	373-8	답	215	215	답	농림지역	경북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 3*7	이*우		
3	경북 예천군 유천면 송지리	373-9	답	116	116	답	농림지역	경북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 3*7	이*우		
계		3필지		2,820	2,820						

의견서

① 사업명	공군 OO전비 비행안전구역 매입사업	
② 의견제출자	성명	
	주소	
	연락처	
③ 의견	(※ 공간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가능)	
공군OO전비 비행안전구역 매입 사업계획(안)에 공고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방부장관 귀하		